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임만균, 김성준, 남창진,
박영한, 박칠성, 이경숙,
이병도, 이소라, 이영실,
이용균, 전병주, 최기찬,
홍국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관계 규정 변동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,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및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함(안 제3조).
- 나.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).
- 다.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용어를 수정함(안 제8조제2항).
- 라.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을 “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, 집행목적, 집행장소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모니터링 하여”를 “점검하여”로, “확인하고”를 “확인하고,”로, “취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취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원칙) 업무추진비는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 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<u>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</u>에 따라 사용·집행해야 한다.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 -- <u>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<u>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<u>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, 집행목적, 집행장소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(생략) ② <u>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<u>모니터링</u>하여 이상 유무를 <u>확인</u>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</u></p>	<p>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점검</u>하여 ----- <u>확인</u>하고, ----- -----</p>

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

- ① (생략)
-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---- 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----- 하여야 한다.